

의안번호	2212538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5.9.4.
추 계 번호	25D46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8,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9억 4,300만원(연평균 7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 (안 제40조 등)	781	766	782	798	815	3,943	789

주: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 (부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26조 (행정각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및 안 40조(기후 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음	의무규정

1)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음.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국가기후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 (부총리)	○	-
2	안 제26조 (행정각부)	○	-
3	안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및 안 40조(기후환경에너지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개편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겸임에 따른 보수상승분과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를 추계함
- 또한 신설되는 차관 1명과 차관보 1명 및 증원되는 비서실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신설되는 차관 비서실의 직원은 3명(5급, 6급, 9급 각 1명)으로 차관보 비서실의 직원은 1명(6급 1명)으로 가정
-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라 인력 및 예산 조정이 예상되는데 이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각 부처의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226명임

[표 2] 개정안에 따른 예상 정원 조정

(단위: 명)

구분	현 정원	개정안에 따른 정원	증감
산업통상자원부	957	731	△226
기후환경에너지부 (현 환경부)	632	858	226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각 부처 직제를 바탕으로 작성

- 소관 사무 이관에 따라 행정지원조직 인력의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증감은 없다고 가정
-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과 인력 조정에 따른 이전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경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 증원되는 차관 및 차관보, 비서실 인원 등의 사무공간은 세종청사 내 유휴공간과 기존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증원에 따른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부총리 겸임)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른 2025년 부총리의 인건비는 1억 7,225만원이고, 장관의 인건비는 1억 6,673만원이므로 보수 상승분은 그 차액인 552만원임
- (차관 및 차관보 신설)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른 차관과 차관보의 연봉액을 적용하고 증원되는 비서실 직원의 보수는 2025년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수 총액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보수 총액: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보수 (2025)	인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부총리 겸임	6	—	6	6	6	6	6	30
차관	159	1	165	169	172	175	179	861
차관보	142	1	148	151	154	157	160	769
5급	79	1	82	83	85	87	88	425
6급	65	2	135	138	140	143	146	702
9급	39	1	41	41	42	43	44	212
합계	—	6	576	588	599	611	624	2,998

주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주2: 차관보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상한액의 90%를 적용하고 직무급 '가'급, 성과급 지급률은 12%를 적용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관부담금

-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관부담금	76	78	80	82	84	3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기본경비

- 2025년도 환경부 예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7.2%³⁾를 앞서 추정된 보수 총액에 적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기본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경비	99	101	103	105	107	5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환경부 2025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를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다. 자산취득비

-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 1인당 508만원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7년에만 발생하며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자산취득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30	-	-	-	-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8,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9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보수	576	588	599	611	624	2,998
기관부담금	76	78	80	82	84	399
기본경비	99	101	103	105	107	516
자산취득비	30	-	-	-	-	30
합계	781	766	782	798	815	3,943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